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6월 27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관
(금융위원회 소관) 맹형규

●대통령령 제22991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연 100분의 44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39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 100분의 44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39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6월 27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관
(금융위원회 소관) 맹형규

●대통령령 제22992호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